

Ial.28.1

Intl

국제인권법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제1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제출에 따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활동자료(96-98년) ①**

국제인권법	507-5881	관악구 신림동 103-2 151-080
국제인권법	305-1265 302-4630	서대문구 종로2가 36길 2 기사연합회 302-4630-012
여성인권위원회	807-2221 816-2222	중랑구 고신동 133 흰돌고 서울시립 407-8156-0700
여성아동인권회	3073-4447 3072-4449	중로구 산본로 173 서울시립·문화회관 3072-4449-110-051 3072-4449-110-051
문화	322-3006 322-3006	마포구 원남동 373-10 신하 121-240
여성문화재단	741-5363 741-5364	중로구 명동2가 307-40
우리아이들회	보육급 051-510-1580 051-615-13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격차하는 보육
여성하는 보육	81 71	보육종합센터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격차하는 모임, 일제학 교수 609-735
여성사회적아동학회	275-8505 275-8505	중구 강동동 1가 38-84 여성친화 100-39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675-0181 675-0184	영등포구 양선5가 131-115 대양 131-115 130-045
전국작곡가연합회	705-5100	용산구 한강로 1가 291-3 140-011
시울자작금부방연합회	012-806-151 2073-3278	
국제인권법	507-5881	
OMEP 세계유아교육기 구 학술위원회	500-5375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이현정 교수 156-770
인간교육장편학부모연 대	700-2397 700-2398	중도구 증승동 1-1 110-510
전주사회통합한민족	527-7234 522-7285	
사 모임		

장관단계

문화체육관광부	031-707-9019 koduk	
문화체육관광부	500-5375	
여성단체연합	273-9525 273-9530	중구 증승동 1가 38-84 여성친화 100-391
여성단체연합	700-3194 700-3294	용산구 한강로 3-1 10-474 248 10-474 249
여성단체연합	576-7128	서초우체국 서서 1 453-137-600
여성단체연합	521-5304	서초구 향리1동 922-16 진일빌딩 2층 137-061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연락처

공동대표

이오덕	502-4960		과천시 중앙동 극동아파트 106동 201호, 427-010
이윤구	780-3705	겸용	
주정일	426-9531		강동구 상일동 174번지 우성빌라 7동 102호, 134-090
한승현	752-7744	74-7573	중구 태평로 2가 360-1 광학빌딩 1001, 110-102

주관단체

KNCC 정의와 평화위원회	764-0203	744-6189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8호, 110-701
공동육아연구회	522-3851	522-3851	관악구 남현동 1056-2, 151-08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스러기선교회	365-1265	392-4630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303호, 120-012
서울평화교육센터	816-2251	816-2252	동작구 흑석동 1-3 원불교 서울회관 401호, 156-070
어린이도서연구회	3672-4447	3672-4449	종로구 산문로 1가 175 서울사대 동창회관 303호, 110-061
물꼬	322-3006	322-3006	마포구 연남동 373-10 지하, 121-240
인권운동사랑방	741-5363	741-5364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051-510-1586	051-515-137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보육종합센타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임재택 교수, 609-735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275-8505	275-8506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100-39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675-6181	675-6184	영등포구 당산6가 121-115, 대영빌딩 3층, 150-046
전국자원활동단체협의회	796-5700		용산구 한강로 1가 291-3, 140-011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012-806-2513	3673-3278 3, 989-4524 8073-8833 313-0196 (여행부)	
OMEP세계유아교육기구 한국위원회	820-5375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이원영 교수 156-756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766-2597	766-2599	종로구 동숭동 1-1, 110-5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522-7284	522-7285	

참관단체

또하나의 문화 교육소 모임	0342-707-9014	하hoduk 천bosuk	
한국여성단체연합	273-9535	273-9539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100-391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790-3154	798-6094	용산구 한강로 3가 40-474 2층 140-1013
성폭력상담소	576-7128	576-7127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137-600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521-5364	584-7701	서초구 방배1동 922-16 진일빌딩 2층, 137-061

천자원
HAKBUMO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A7 -1	33

인권운동사랑방

140-150 서울시 응산구 갈월동71-12 조양BD 3층 대표전화 715-9185 / 전송 715-9186

‘아동의 권리조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준비모임(1차) 제안

1. 공동대책위원회의 필요성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12월에 UN아동의 권리조약을 비준함으로써 이 조약에 가입했다.

이 조약 44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1994년 11월에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조약 43조에 의하여 구성된 ‘아동의 권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 심사를 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위원회’는 해당국 민간단체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반박보고서) 제출을 허락하고 있는 데 이것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가 반박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1995년 7월 초까지로 되어 있다.

UN 아동의 권리위원회는 올해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비공개로 사전(pre-sessional)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등 6개국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질문서를 작성한다. 이 회의에는 반박보고서를 낸 민간단체가 참석하여 약 3시간 동안 자신의 반박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국정부에 대한 질문서에 정부는 96년 1월 이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하며 96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열린 UN 아동의 권리위원회 제 11차 회기에서 검토된다.

민간단체가 반박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위원회는 거의 정부의 보고서에만 의거하여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5년동안 정부보고서가 UN에서 공신력을 갖게 된다.

2. 일정(안)

- * 2월 중순까지 반박보고서 제출 주체(공대위)를 구성
- * 2월 말까지 집필자, 번역자, 조사팀을 구성하고 세부계획을 세운다. 2월 말부터 조사작업 시작.
- * 4월 말까지 조사활동 완료.
- * 5월 말까지 집필 완료.
- * 6월 중순까지 번역 완료. 발송
- * 8월 자료집 (조약, 관련문서들, 정부보고서, 반박보고서 등) 제작. 제네바 파견자(10월) 선정

3.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준비모임(1차) 안내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그동안 ‘아동의 권리조약’ 반박보고서 제출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의 필요를 절감하면서 여러 단체 및 개인들과 접촉을 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단체 및 개인의 동의를 얻어 1차 준비모임을 갖기를 제안한다.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 이기범 (숙명여대 교수. ‘또하나의 문화’)
- * 장호순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 * 민주주의법학연구회-교섭중
- * YMCA연맹-교섭중
- * 기타 고등학생들

1차 준비모임 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1995년 2월 9일 (목) 저녁 6시 30분.

‘인권운동사랑방’ (전철 4호선 서울역과 속대입구역 중간. 라사라복장학원 건물 3층)

인권운동사랑방

가칭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연대회의” 1차 준비모임 결과보고

일시: 1995년 2월 9일 오후 6-9시 인권운동사랑방

1. 참가단체 및 개인

전교조, 인권운동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 어린이 도서연구회, 이기범(숙대교육학과), 장호순(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교육원), 아시아평화교육센터, 호용수(또하나의 문화 교육소모임), 이용교(청소년개발원), 현병호(공동육아연구회), 안창도(교육민회), 육영경(열린글 나눔쉼터)
(민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공식참여를 약속했으나 본 회의에는 불참)

2. 논의내용

- 1) '아동의 권리조약'과 모임에 대한 설명 및 취지 공유
- 2) '정부보고서'에 대한 설명
- 3) 토론

- 조직 명칭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연대회의'(가칭)로 한다.
- 연락업무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맡는다.
- 참가범위: 가능한한 많은 단체가 참가하도록 조직한다.
여성단체연합, 지탁연, 민주법연(박홍규), 시설문제연구회, 공부방연합회, 한교협, 어린이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인권협에 참가권유를 한다.
- 참가수준: 공식참여, 옵저버, 개인참여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조건은 다음회의에서 결정 한다. 공식참여자는 각 단체에서 논의한 후 16일(목)까지 사랑방으로 통보한다.
공식참여는 재정총액의 공동부담을 결의하여야 한다.
- 16일(목)까지 공식참여를 통보한 단체의 명의로 정식제안서를 작성, 배포한다.
- 예산계획, 활동일정 등의 세부계획서를 사랑방이 제출한다.
- 아동의 권리조약의 교육과 홍보효과를 위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으로 부르기로 한다.
- 모임의 활동을 반박보고서작성에만 엄격히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결정사항은 없으나 이행촉구서 제안, 대중교육, 자료집발간, 내부학습 등의 필요성 공유
- 다음모임결정: 21일(화) 6시 인권운동사랑방

2) 1차준비모임
참가결의 단체는 가능한 접필분야와 주제의 선정, 번역가능여부를 사전 준비한다.

일시: 1995년 2월 9일 오후 6-9시 인권운동사랑방

1. 참가단체 및 개인

전교조, 인권운동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 어린이 도서연구회, 이기범(숙대교육학과), 장호순(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교육원), 아시아평화교육센터, 호용수(또하나의 문화 교육소모임), 이용교(청소년개발원), 현병호(공동육아연구회), 안창도(교육민회), 육영경(열린글 나눔쉼터)
(민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주법연합, 여성단체연합회, 한교협)

인권운동사랑방

'SARANBANG' CENTER FOR HUMAN RIGHTS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수신 : 각 단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담당자

발신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2차 준비모임 제안

1)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필요성

아동을 둘러싼 여러 상황의 악화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어른들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할 때이다.

여기, 아동을 분명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유엔조약이 있다. 1989년에 유엔총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조약'을 채택했다. 우리정부는 1991년 12월에 비준하였고, 본 조약 4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11월에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96년 1월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질문과 논의를 통해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게 된다. 그러나, 여려면에서 정부보고서는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처한 객관적 현실을 무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조문과 규범의 단순나열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국 민간단체의 보고서 제출을 허락. 권장하고 있는 바 민간단체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보고서(counter report)는 96년 7월 초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보고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잘못을 지적할 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공적토론과 홍보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관련단체와 개인의 많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2) 1차준비모임보고

일시: 1995년 2월 9일 오후 6-9시 인권운동사랑방

1. 참가단체 및 개인

전교조, 인권운동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 어린이 도서연구회, 이기범(숙대교육학과), 장호순(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교육원), 어설파평화교육센터, 호용수(또하나의 문화 교육소모임), 이용교(청소년개발원), 현병호(공동육아연구회), 안창도(교육민회), 육영경(열린글 나눔쉼터)
(민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주법학은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1차회의에는 불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가칭)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수신: 각 단체 「연대회의」담당자

매수: 7매(별지포함)

2차 준비모임 보고

1. 일 시: 1995년 2월 21일 오후 7시 인권운동사랑방

2. 참가단체 및 개인:

공동육아연구회, 또 하나의 문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어린이도서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지역사회탁아소연합, 이용교(개인), 이정국(개인), 경상전문대 유아교육과
교수)

3. 논의사항

1) 참가단체점검

21일 현재 현황- 주관단체참여의사를 밝힌 단체 8개, 참관단체참여의사를 밝힌 단체 1개, 개인참가자 2인이며, 논의가 진행중인 단체는 6개이다.

2월 28일까지 참가접수를 1차 마감하고 공식결성을 한다.

2) 예산 검토

지 출

아동의 권리위원회 실무분과회의(비엔나)참가비용	150만원	× 1150만원
번역료	3만원	× 20 60만원
번역감수		10만원
행사비(기자회경, 공개토론회등)		20만원
홍보비(홍보팜플렛작성)		20만원
기타(연락비-국제전화등, 복사)		20만원
예비비		20만원

총 계 300만원

* 행사, 홍보비는 연대회의 사업수준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수 입

비엔나회의참가비용(본인부담 및 특별후원금, 주관단체임시분담금)	150만원
주관단체 분담금	8개 × 18만원 144만원
서명단체 분담금	1개 × 5만원 5만원

총 계 300만원

* 21일 현재의 참가단체 숫자에 따른 분담금상황이며 주관단체와 서명단체가 더 늘어날 우 아래와 같이 달라질수 있다.

주관단체 분담금	10개 × 12만5천원	125만원
서명단체 분담금	5개 × 5만원	25만원

* 개인참가자는 분담금 납부의 의무는 없으나, 후원금 또는 실무참여, 집필 등으로 기여하는 인사로 한다.

* 본 예산은 최소규모이므로 각 단체조건과 결의에 따라 분담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해외재정지원금확보, 후원금 모금을 위해 노력한다.

3) 참가단체의 권리와 의무

주관단체 -

권리: 민간단체보고서의 제출단체로 연명된다. (Submitted by.....)
제네바회의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대외발표행사를 주최한다.

의무: 분담금을 완납한다.
원고집필, 종합, 번역, 정리에 참여한다.
실무회의에 참석한다.

등의서명단체 -

권리: 민간단체보고서의 지지단체로 연명된다 (Endorsed by.....)
해당영역에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대외발표행사를 주최할 수 있다.
실무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의무: 분담금을 완납한다.

* 개인참가자 - 민간보고서 한글본에 이름을 연명한다.
집필, 조사, 재정, 실무회의 참석등으로 기여할 수 있다.

4) 일정

~ 2월 28일

참여단체 확정 및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공식결성
홍보자료제작, 기초보도자료배포
기자회견 및 결성행사

~ 3월 초

집필분야, 집필자, 번역자, 감수팀, 조사팀을 구성, 세부계획완성.

~ 4월 중순

한글원고초고제출

~ 4월 말

초고검토모임

~ 5월 중순

한글원고 보완 완료.

~ 5월 말

영문번역, 감수.

~ 6월 중순

유엔에 보고서 제출전 공동기자회견.

10월

정부-민간단체 토론회 제안

보고서제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실무분과회의 참석

5) 집필범위 및 집필팀

집필범위는 정부보고서 목차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분류를 하였다.(별지참조)

이에 기초하여 다음 집필자모임(3월 3일 ~~또는 4일 예정~~)을 통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각 단체는 다음 모임까지 관련집필조항과 집필자를 선정한다.

6) '후속활동 및 연대회의 사업(보고서 작성외의 사업)검토- 제안자 : 인권운동사랑방

1. 결성행사

실무자만이 아니라 참여하는 단체의 성원들이 본 사업의 취지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문제에 대한 대중의 문제의식을 넓히기 위하여 연대회의 결성 시기에 맞추어 공식행사를 갖는다. 행사내용은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설명, 정부보고서 분석 발표, 대표적인 아동 인권침해 사례발표나 관련연구자의 의견발표 등 참가단체가 그간 아동문제에 대해 축적해온 문제의식을 모아본다. 결성행사와 함께 연대회의 활동의 취지와 일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2. 정부-민간단체 토론회 제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활동과 보고서제출과 관련된 일련활동의 목적은 '생산적인 토론'과 그를 통한 '아동인권의 개선을 위한 협력'이다. 아동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공적토론을 일으킬 기회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민간단체 간의 토론과 협력은 중요하다. 정부가 이에 비 협조적이고 불성실할 지라도 최대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도록 노력한다.

3. 출판, 홍보사업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대한 대중교육을 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한다. 또한 보고서 제출이후 연대회의의 활동보고와 정부-민간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자료집을 발간한다.

토론결과:

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나, 연대회의의 활동이 '보고서 작성'에 집중되는 것과의 조화와 역량이 문제시된다.

문화행사등을 결합하여 각 참여단체 성원들의 결속감을 높이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에 앞서 권리조약과 정부보고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결성행사는 조약과 정부보고서에 대한 '설명회' 형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구체적인 계획서는 사랑방이 제출하기로 하였다.

기타의견:

*어린이날 전후의 기획행사가 가능하다. 한글원고가 마무리될 시점이므로 CATV 교육부분, 신문사 등과 접촉하여 기획시리즈를 내자.

*초고검토모임과 Workshop을 겸하여 갖자

*후속활동으로 내년 1월 보고서심사와 그 결과를 지켜보며 정부활동에 대한 감시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와의 접촉의 수준을 높여가며 정부보고서의 근거자료등에 대해 적극적 요청을 한다.

*정부-민간단체 토론회를 정부책임자 불참시 심포지엄 등의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보고서 제출과 함께 "잔치"분위기의 정리행사를 갖자.

*위의 활동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연대회의의 활동을 '보고서작성'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우선은 각 단체가 정부보고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본 사업에 대한 감을 잡는 것이 시급하다.

7) 기타

- 대표선출

이오덕, 한승현, 주정일, 이윤구 씨가 추천되었으며 개별접촉을 통해 의사를 수렴하여 결성대회전까지 공동대표를 선출한다.

- '연대회의'의 연락처는 인권운동사랑방으로 한다.

이기범 교수(숙대 교육학)가 실무를 총괄하고 사랑방의 류은숙, 김정희 간사가 실무간사로 활동한다.

- 실무회의는 전체모임을 지양하고 되도록이면 팩스나 전화연락으로 사업을 처리하도록 한다. 각 단체는 실무를 지원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실무간사에게 추천한다.
- 연대회의 중심모임은 실무모임보다는 필진모임이다. 보고서작성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 집필진의 모임을 강화한다.

目 次

대략 엄상하게 나눈 것입니다.
 더 정확한 집필팀 구성은
 집필자 모임 후 결정됩니다.
 집필자 모임은 3월 3일 ~~에서~~
~~에~~에 가질 예정입니다.
 추후 연락 하겠습니다.

序 論 - 집필자들의 역할을 거쳐 한명이 대표집필 1

第1章 協約 履行을 위한 一般 措置	6
第1節 協約의 規程과 國內法 및 政策의 調和 方案	7
第2節 兒童關聯 政策의 調整 및 協約履行 事項의 모니터링을 위한 機關	
<u>민변</u>	
第2章 兒童의 定義	1
<u>e 미정</u>	
第3章 一般原則	15
第1節 無差別 原則(協約 第2條)	15
第2節 兒童利益 最優先의 原則(協約 第3條)	16
第3節 兒童의 生命, 生存 및 發達權(協約 第6條)	16
第4節 兒童에 대한 意思尊重의 原則(協約 第12條)	16
第4章 市民的 權利와 自由	18
第1節 이름과 國籍(協約 第7條)	18
第2節 身分의 維持(協約 第8條)	19
第3節 表現의 自由(協約 第13條)	20
第4節 思想, 良心 및 宗教의 自由(協約 第14條)	21
第5節 結社 및 集會의 自由(協約 第15條)	22
第6節 私生活의 保護(協約 第16條)	22
第7節 情報接近權(協約 第17條)	23
第8節 拷問 및 其他 非人道的 取扱을 받지 않을 權利 (協約 第37條 第1項)	24

第5章 家庭環境 및 代理保護	25	나. 自由剝奪된 兒童(協約 第37條 第2項, 3項, 4項)	58
第1節 父母의 指導外 責任(協約 第5條, 第18條 第2項)	25	다. 兒童에 대한 死刑 및 終身刑 禁止(協約 第37條 第1項)	61
第2節 父母로부터의 分離(協約 第9條)	26	라. 社會復歸支援(協約 第39條)	61
第3節 家族의 再結合(協約 第10條)	27	第2節 摧取 狀況下의 兒童	62
第4節 兒童을 위한 養育費 回收(協約 第27條 第4項)	27	가. 經濟的 摧取(協約 第32條)	62
第5節 家庭環境 壞失 兒童(協約 第20條)	27	나. 痢藥(協約 第33條)	63
第6節 入資(協約 第21條)	29	다. 性的 摧取外 虐待(協約 第34條)	64
第7節 不法海外移送 및 未歸還(協約 第11條)	31	라. 其他 形態의 摧取(協約 第36條)	64
第8節 兒童 虐待, 遺棄 및 身體的, 心理的 回復과 社會復歸 (協約 第19條 및 第39條)	31	參 考 文 獻	65
第9節 養育 및 保護機關에 대한 審查(協約 第25條)	33	附 錄: 兒童의 權利에 관한 協約	71
[이기방, 강명순, 민연]			
第6章 基礎保健 및 福祉	35		
[+ 8장 그려]			
第1節 生存 및 發達(協約 第6條 第2項)	35		
第2節 障碍兒童(協約 第23條)	37		
第3節 保健서비스(協約 第24條)	39		
第4節 社會保障 및 兒童保護施設(協約 第26條 및 第18條 第3項)	40		
第5節 生活水準(協約 第27條 第1項, 2項, 3項)	42		
[이용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탁연, 공동육아연구회]			
第7章 教育, 餘暇 및 文化的 活動	44		
第1節 教育(協約 第28條)	44		
가. 學校의 種類	45		
나. 教育豫算	50		
第2節 教育의 目標(協約 第29條)	52		
第3節 餘暇, 娛樂活動 및 文化的 活動(協約 第31條)	53		
[전교노, 뜨 하나의 見임]			
第8章 特別保護措置	54		
第1節 法的 紛爭上의 兒童(協約 第40條, 第37條, 第39條)	54		
가. 少年刑事行政(協約 第40條)	54		

정회.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연대회의

소속단체	참가자	참가여부	전화번호	팩스번호
KNCC 인권위		주관	764-0203	744-6189
공동육아연구회 2차.	현 병호	주관	324-3851	324-3851
교육민회	안 창도	개인	745-8333	766-2599
또 하나의 문화(교육소모임) 2차.	호 용 수	참관	324-7486 713-9014(H)	T.D. H - hoduk C - besuk.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 은 영	주관	522-7284	522-7285
부스러기선교회			365-1265	392-4630
서울공부방연합회	임 미 경		752-8308	773-3158
서울평화교육센터	고 병 현	주관	816-2251	816-2252
숙명여대 교육학과 2차. 공동육아연구회	이기범	주관	710-9343	
어린이도서연구회 2차.	최 선 미		733-4992	733-4993
여성단체연합	조 영희		274-2883	264-2778
열린글 나눔쉼터	옥 영경	주관	582-2182 597-4803	585-1023
영남대 법학과	박 흥 규		053-810-2620	053-814-3199
인권운동사랑방	서 준식	주관	715-9185	715-9186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임 재택	주관	051-510-1591	051-515-1371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주관]	521-5364	584-7701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2차.	오 윤정.		275-8505#	275-8506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오 성숙	[참관]	675-9068	634-4359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장 호순	[개인]	744-3964	766-3964
학부모연대회의	정 유성		766-2597	
한국청소년개발원	이 용교	개인	578-7925	578-3985

~~숙명여대~~ 교육학과.

[개인]

경상전문대.

전 교육

주관.

참여연대.

한인섭

‘아동의 권리조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차 준비모임

기획)

“어린이의 권리” 대회

1995년 2월 9일 오후 6시 30분

인권운동사랑방 세미나실

1. 참가단체 및 개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YMCA연맹,
인권운동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 어린이도서연구회, 학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기범(숙명여대 교수), 장호순(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고등학생

2.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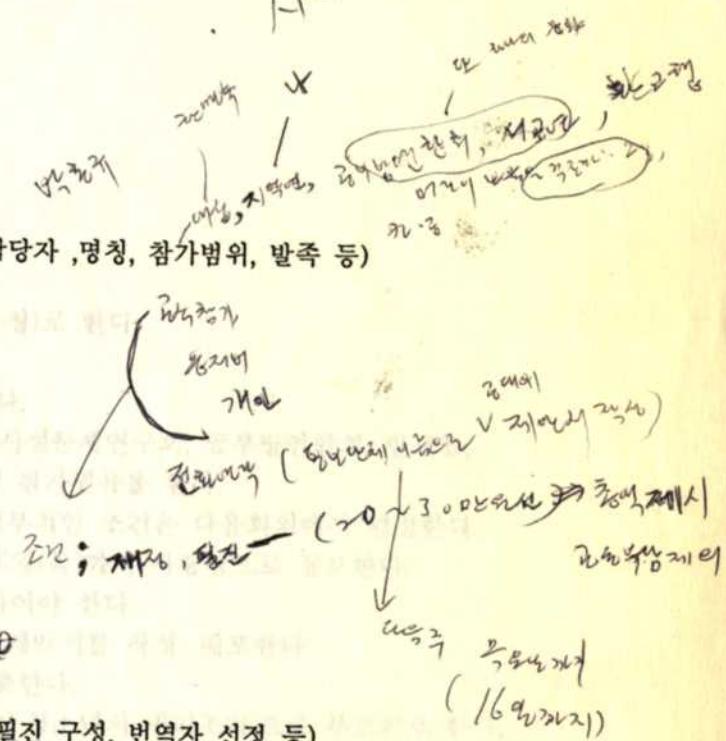
- ① ‘아동의 권리조약’ 및 모임의 취지 설명
- ② 정부보고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
- ③ 토론

3. 검토해야 할 과제

- ① 반박보고서 제출을 위한 주제 구성문제 (조직, 연락담당자, 명칭, 참가범위, 발족 등)

UN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 ② 일정



- ③ 반박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 (분야 결정, 조사작업, 필진 구성, 번역자 선정 등)

- ④ 조약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주제)

- ⑤ 활동을 반박보고서 작성에만 협력히 한정할 것인가 (대중적 계통, 자료집, 내부학습 등)

이행률 추구서 제작

- ⑥ 다음 모임을 위한 약속

$$21일 (화) = 6 : 00$$

가칭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연대회의” 1차 준비모임 결과보고

2. 논의내용

1) '아동의 권리조약'과 모임에 대한 설명 및 취지 공유

-조직 명칭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가칭)'로 한다.

-연락업무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맡는다.

-참가범위: 가능한 많은 단체가 참가하도록 조직한다.

1. 참가단체 및 개인

전교조, 인권운동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 어린이 도서연구회, 이기범(숙대교육학과), 장호순(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교육원), 아시아평화교육센터, 호용수(또하나의 문화 교육소모임), 이용교(청소년개발원), 현병호(공동육아연구회), 안창도(교육민회), 육영경(열린글 나눔쉼터)

(민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주법학 불참)

-10월 10일(목)까지 참가신청을 받았던 단체 10개 이상이 참석을 확정해 보았다.

-예산계획, 활동일정 등의 세부계획서를 제출한다.

-기준의 '아동의 권리조약'이라는 명칭은 일반에게 인식되는 '아동'의 의미 대로 풀이 해석된다.

2. 논의내용

1) '아동의 권리조약'과 모임에 대한 설명 및 취지 공유

2) '정부보고서'에 대한 설명

3) 토론

-조직 명칭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연대회의(가칭)'로 한다.

-연락업무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맡는다.

-참가범위: 가능한 많은 단체가 참가하도록 조직한다.

* 여성단체연합, 지탁연, 민주법연(박홍규), 시설문제연구회, 공부방연합회, 한교협,

3) '어린이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인권협동에 참가권유를 한다.

-참가수준: 공식참여, 옵저버, 개인참여로 구분하되 세부적인 조건은 다음회의에서 결정한다.

공식참여결의는 각 단체에서 논의한 후 16일(목)까지 사랑방으로 통보한다.

공식참여는 재정총액의 공동부담을 결의하여야 한다.

-16일(목)까지 공식참여를 통보한 단체의 명의로 정식제안서를 작성, 배포한다.

-예산계획, 활동일정 등의 세부계획서를 사랑방이 제출한다.

-아동의 권리조약의 교육과 홍보효과를 위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으로 부르기로 한다.

-모임의 활동을 반박보고서작성에만 엄격히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결정사항은 없으나 이행촉구서 제안, 대중교육, 자료집발간, 내부학습 등의 필요성 공유

-다음모임결정: 21일(화) 6시 인권운동사랑방

참가결의 단체는 가능한 집필분야와 주제의 선정, 번역가능여부를 사전 준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SARANBANG' CENTER FOR HUMAN RIGHTS

140-150 서울시 응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수신: 각 단체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담당자

발신: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2차 준비모임 제안

1)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필요성

아동을 둘러싼 여러 상황의 악화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어른들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할 때이다.

여기, 아동을 분명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유엔조약이 있다. 1989년에 유엔총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조약'을 채택했다. 우리정부는 1991년 12월에 비준하였고, 본 조약 4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11월에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96년 1월 유엔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질문과 논의를 통해 한국의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게 된다. 그러나, 여하면서 정부보고서는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처한 객관적 현실을 무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조문과 규범의 단순나열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국 민간단체의 보고서 제출을 허락. 권장하고 있는 바 민간단체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보고서(counter report)는 96년 7월 초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보고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잘못을 지적할 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공적토론과 홍보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관련단체와 개인의 많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2) 1차준비모임보고

일시: 1995년 2월 9일 오후 6-9시 인권운동사랑방

1. 참가단체 및 개인

전교조, 인권운동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 어린이 도서연구회, 이기범(숙대교육학과), 장호순(크리스챤 카테미사회교육원), 아시아평화교육센터, 호용수(또하나의 문화 교육소모임), 이용교(청소년개발원), 현병

호(공동육아연구회), 안창도(교육민회), 옥영경(열린글 나눔삶터)

(민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주법학은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1차회의에는 불참)

2. 논의내용

1) '아동의 권리조약'과 모임에 대한 설명 및 취지 공유

2) '정부보고서'에 대한 설명

3) 토론

-조직 명칭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가칭)로 한다.

-연락업무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맡는다.

-참가범위: 가능한한 많은 단체가 참가하도록 조직한다.

* 여성단체연합, 지탁연, 민주법연(박홍규), 시설문제연구회, 공부방연합회, 한교협,
어린이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인권협등에 참가권유를 한다.

-참가수준: 공식참여, 읍저버, 개인참여로 구분하되 세부적인 조건은 다음회의에서 결정한다.

공식참여결의는 각 단체에서 논의한 후 16일(목)까지 사랑방으로 통보한다.

공식참여는 제정총액의 공동부담을 결의하여야 한다.

-16일(목)까지 공식참여를 통보한 단체의 명의로 정식제안서를 작성. 배포한다.

-예산계획, 활동일정 등의 세부계획서를 사랑방이 제출한다.

-기존의 '아동의 권리조약'이라는 명칭은 일반에게 인식되는 '아동'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조약의 교육과 홍보효과를 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조약'으로 부르기로 한다.

-모임의 활동을 반박보고서작성에만 엄격히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결정사항은 있으나 이행촉구서 제안, 대중교육, 자료집발간, 내부학습 등의 필요성 공유

-다음모임결정: 21일(화) 6시 인권운동사랑방

참가결의 단체는 가능한 집필분야와 주제의 선정, 번역가능여부를 사전
준비한다.

3)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2차회의 안내

1. 안건: 참여단체결정

일정점검

예산안과 재정분담금 검토

연대회의의 활동수준논의

2. 1995년 2월 21일 (화) 저녁 6시

'인권운동사랑방' (전철 4호선 서울역과 숙대입구역 중간. 육교옆 라사라
복장학원건물 3층)

일자: 1995년 2월 19일 오후 6~9시 인권운동사랑방

1. 참가단체 및 개인

전로조, 인권운동사랑방, 육교육학부모회, 어린이 노기원(어린이기본권운동), 청소년문화기획
기획비자금회(총회), 아시아생태교육센터, 조용수(프리니고 문화 교육운동팀), 이동근(한국여성운동연대), 이재

<논의사항: 결성식에서 나왔던 문제제기와 뒷풀이때의 토론을 정리한 것입니다.>

1. 명칭문제

유니세프가 기존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번역, 사용해왔던 점에 대한 인정을 주장한데 대하여-

연대회의는 1차 준비모임의 논의 결과, '아동' 부분을 '어린이, 청소년'으로 부르기로 한 바 있다. 조약상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 '아동'이라 부를 때 그 대상이 축소되어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효과를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으로 부르기로 한 것이다.

또한 '협약'을 '조약'으로 부르기로 한 것은 기존에 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을 번역할 때 '규약'이나 '협약'이라는 용어를 혼용함으로써 조약의 강제성을 희석시키고 주요인권 조약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협약', '규약', '조약'이라는 명칭에는 서로를 구분하는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데 비추어 '조약'으로 번역 하는 것이 인권관련조약의 강제성과 효력을 강화시키는 점이 있으므로 연대회의는 '조약'으로 부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이후 전체회의에서 명칭문제를 재토론하기로 하였다.

2. 조직문제

연대회의의 활동은 '민간단체보고서의 작성'에 집중하기로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그외 사업은 각 단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화하기로 하였고, 따라서 결성식에서 발표된 사업계획은 합의된 사항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문제제기 속에서 더 큰 강제력을 띤 연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유니세프를 비롯한 기존의 활동을 계승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그 누구의 정통성을 따지거나 계승하여 만든 단체가 아니며, 연대회의의 '결성목적과 사업내용, 참여단체의 권리와 의무' 등은 참가단체간에 충분히 공개되었다. 따라서 몇 사람의 주장에 의하여 연대회의의 사업목적이 바뀐다거나 사업계획이 늘어나 참가단체가 받는 부담이 늘어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사업의 정통성 주장은 있을 수 없으며, 조직의 상이 바뀌는 것은 전체 참가단체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연대회의는 유관단체와의 '상호협조와 협력'에 충실하면 될것이고, 연대회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성식진행의 미숙함으로 이런점을 충분히 정리해내지 못하여 참가단체들이 '주인'이 아닌 '손님' 같은 불편함을 느낀점에 사과드린다. 아울러 참가단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는 단체와 참가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단체는 빠른시일내에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제정보고>

수입:	단체분담금	85만원(7개단체 납부)
	정부보고서판매	1만 6천원
지출:	정부보고서구입	5만 2천원
	결성식장소대여	30만원
	결성식자료집(200권)	15만 4천 5백원
	결성식현수막	4만원

결성식팁풀이 18만 8천원
잡비 2만 5천 8백 70원

잔액: 10만 5천 6백 30원

* 주관단체 분담금은 13만원입니다.

분담금을 10만원 낸 단체는 3만원을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담금을 아직 내지 않은 단체는 빠른시일내에 아래 구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자이름으로는 단체이름확인이 어려우니 입금하신 후에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054-21-0442-803(예금주 류은숙)

이후일정

<집필자모임>

2차 집필자모임에서 결정된 대로 아래 일정에 따라 원고를 집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필 방향은 결성식 자료집에 실려있습니다. 집필방향을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빠른시일내에 간사단체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까지 1차 원고 취합

4월 17일까지 실무대표와 간사검토 후 각 단체로 반송

4월 24일, 1차 원고 검토모임(오후 7시 인권운동사랑방)

원고를 제출하실 때는 다음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서양식에 충실한다.(각 장마다 주어진 분량을 지킨다.)

- 1) 소제목을 꼭 뺏는다(문제제기의 핵심을 담은 제목을 뺏아 제목만 보아도 내용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 2) 정부보고서(영문판)의 일련번호에 맞추어 서술한다.
- 3)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는다.(사법. 행정적 제도와 절차의 개선, 예산. 시설의 확충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적는다. 추상적 선언이나 주장은 쓰지 않는다.)

2) 관련조사자료와 통계, 사례등을 제출한다.

보고서분량에 제한받지 않는 풍부한 내용의 글이 필요합니다. 이는 1)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활동상황을 성격이 다른 여러 단체가 공유할 수 있고, 2) 이후 아동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집발간과 정부와의 간담회를 예상하여 필요하며, 3) 5월 어린이달 기획 시리즈의 준비와 병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실무회의>

각 단체 실무자는 집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회의는 1차원고가 완료될 때(4월 10일경)에 맞추어 가질 계획입니다.

1차 원고가 완료될 시기에 진행할 언론사와의 '어린이달 기획시리즈'의 기획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몇개 언론사가 긍정적인 검토속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실무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결성식 평가와 문제제기 토론: 명칭 문제 및 연대회의 조직과 사업수준
- 2) 사업점검: 보고서진행과정 점검

어린이달 기획시리즈

연대회의 workshop 개최 문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제 3차 실무회의

일시: 4월 10일(월) 오후 7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참석:

회의안건

1. 결성식 평가와 문제제기 토론: 연대회의 명칭문제와 조직과 사업수준에 대하여
2. 사업점검
 - ㄱ. 어린이달 기획행사에 대하여
 - ㄴ.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대한 홍보물 제작과 배포에 대하여
 - ㄷ. 연대회의 워크샵에 대하여
 - ㄹ. 기타
3. 연대회의 재정에 대하여

1. 결성식 평가와 문제제기: 아래의 결성식 보고문건 참조

-----아래-----

<논의사항: 결성식에서 나왔던 문제제기와 뒷풀이때의 토론을 정리한 것입니다.>

1. 명칭문제

유니세프가 기존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번역 사용해왔던 점에 대한 인정을 주장한데 대하여-

연대회의는 1차 준비모임의 논의 결과, '아동'부분을 '어린이·청소년'으로 부르기로 한 바 있다. 조약상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 '아동'이라 부를 때 그 대상이 축소되어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효과를 위하여 '어린이·청소년'으로 부르기로 한 것이다.

또한 '협약'을 '조약'으로 부르기로 한 것은 기존에 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을 번역할 때 '규약'이나 '협약'이라는 용어를 혼용함으로써 조약의 강제성을 희석시키고 주요인권 조약에 대한 소극적태도를 보여왔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협약', '규약', '조약'이라는 명칭에는 서로를 구분하는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데 비주어 '조약'으로 번역하는 것이 인권관련조약의 강제성과 효력을 강화시키는 점이 있으므로 연대회의는 '조약'으로 부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의 문제제기를 받아들 이후 전체회의에서 명칭문제를 재토론하기로 하였다.

2. 조직문제

연대회의의 활동은 '민간단체보고서의 작성'에 집중하기로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그외 사업은 각 단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화하기로 하였고, 따라서 결성식에서 발표된 사업계획은 합의된 사항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문제제기 속에서 더 큰 강제력

을 띤 연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유니세프를 비롯한 기존의 활동을 계승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그 누구의 정통성을 따지거나 계승하여 만든 단체가 아니며, 연대회의의 '결성목적과 사업내용, 참여단체의 권리와 의무' 등은 참가단체간에 충분히 공개되었다. 따라서 몇 사람의 주장에 의하여 연대회의의 사업목적이 바뀐다거나 사업계획이 늘어나 참가단체가 받는 부담이 늘어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사업의 정통성 주장은 있을 수 없으며, 조직의 상이 바뀌는 것은 전체 참가단체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연대회의는 유관단체와의 '상호협조와 협력'에 충실하면 될것이고, 연대회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성식진행의 미숙함으로 이런점을 충분히 정리해내지 못하여 참가단체들이 '주인'이 아닌 손님' 같은 불편함을 느낀점에 사과드린다. 아울러 참가단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는 단체와 참가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단체는 빠른시일내에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2. 사업점검

ㄱ. 민간단체보고서 집필상황 점검

1장 민변()

2장, 3장 이기범()

4장 민주법연(0)

5장 민변()

부스러기선교회()

노혜련()

전국자원활동단체협의회() ?

6장 이용교(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7장 전교조() ↗

8장 민변()

성폭력상담소(0)

ㄴ. 어린이달 기획행사에 대하여

① 언론사와의 공동기획시리즈:

경과보고

→ 각 단체의 집필가능하거나 희망하는 주제제출 ←

예상필진(보고서 집필자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기획단의 구성

→ 기획명 제작

(관리자 → 서명)

② 각 단체 5월 어린이달 행사기획 공유 ; 서명여부 : 동성대회(우수상) → 어린이날

여름축제(우수상) 5/11 개최

성폭력방지, 성폭력예방대회 → 개최일정

벽화작성 교육 (우수상), 그네네트워크 활동

자작여행 : 친환경 힐링 어린이주제, 어린이날 행사를

③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조약에 관한 홍보물 제작과 배포:

연대회의 사업기획 속에 예정되어 있던 사업으로 권리당사자인 어린이, 청소년이 부모님이나 친구들께 쉽게 읽을 수 있는 조약해설이 필요하다. 기획, ~~설화~~, 문구작성 등에 가능한 단체의 실무자가 공동참여하여 만들고 각 단체의 어린이달 행사개최시에 배포하거나 가능하다면 어린이날을 기해 집중적인 홍보전을 공동으로 펼칠것을 제안한다.

서명자: 김우진
날짜: 2024. 5. 24. 주

ㄴ. 연대회의 워크샵에 대하여

제안: 5월 중순 보고서 한글본이 완료될 시기에 갖는다.

1부 보고서 내용 공유, 2부 친목의 시간으로 갖는다. 또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토론에 집중한다.

문제점: 보고서 내용을 놓고 정부-민간단체 토론회가 열린다면 사전 준비모임으로 내부 워크샵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경우는 집필진의 모임으로 압축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1, 2부 형식으로 가질경우 모임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참석자의 성격도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ㄷ. 기타

1) 각 단체 회원 회람용 문건이 필요하다:

내용-연대회의 결성목적, 사업내용, 조약에 대한 간단한 해설, 참가단체에 대한 소개, 참가단체의 권리와 의무명시

회원등록 (2024. 5. 24. 주)

각 단체 소개자리 설정

총 4명은 3명

참가단체 소개에 대해 각 단체가 제출해야 할 것

단체이름:

대표자와 주요실무진 명단:

단체의 활동목적:

창립일:

간단한 사업내용(각 단체의 대표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분량: A4 ~~절반정도~~ 1장 정도

*제출하신 각 단체의 팝플렛과 자료집은 따로 목록화하여 실을 예정입니다.

2) 일정점검

4월 17일: 초고검토 후 각 단체반송

4월 24일: 집필자 초고검토모임 오후 7시 인권운동사랑방

5월 : 어린이달 기획시리즈, 조약홍보전

5월 중순: 한글원고완료

정부-민간단체 토론회 제안

5월 말 : 영문번역완료, 감수

6월 중순: 정부-민간단체토론회, 공동기자회견/ 유엔에 보고서제출

10월 : 비엔나에 대표파견

*** 파견할 대표에 대하여 각 단체의 고민과 추천이 필요하다.

3) 정부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의 구체적 실현에 대하여

연대회의 주요활동 목표이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가안으로 잡혀있는 종합자료집발간을 정례화하여 아동문제백서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낮은 수준에서는 각 단체의 아동문제에 관한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정보교류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3. 재정보고

수입

민변	13만원	13만원
김경영()	13만원	13만원
민주법연	10만원	10만원
전국자원활동단체협의회	13만원	13만원
김진화()	13만원	13만원
조월례()	13만원	13만원
보육모임()	13만원	13만원
여성단체연합	5만원	5만원
부스러기선교회	13만원	13만원
787-01-0011317()	13만원	13만원
인권운동사랑방	13만원	13만원
세계유아교육기구 한국위원회	10만원	10만원
정부보고서 판매	1만 6천원	1만 6천원

합계 - 142만원

지출

정부보고서 구입	52,000 원
결성식장소대여	300,000 원
결성식 자료집	154,500 원
결성식 현수막	40,000 원
결성식 뒷풀이	188,000 원
결성식 잡비	25,870 원
우편발송비	31,370 원
복사비	78,330 원

합계 - 870, 070 원

잔액 549, 930 원.

추정예산: 수입-분담금완납시 70만원 추가-합계: 1,249,930원

지출- 번역료	60만원
번역감수	10만원
홍보비	20만원
행사비	20만원
기타	15만원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종합자료집발간, 대표자비엔나파견비용

7500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연락처: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 팩스 715-9186

수신: 각 단체 연대회의 담당자

발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제 3차 실무회의보고서

일시: 4월 10일(월) 오후 7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참석: 인권운동사랑방, 성폭력상담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또하나의 문화,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열린글 나눔쉼터

회의안건

1. 결성식 평가와 문제제기 토론: 연대회의 명칭문제와 조직과 사업수준에 대하여
2. 사업점검
- ㄱ. 어린이달 기획행사에 대하여
- ㄴ.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대한 홍보물 제작과 배포에 대하여
- ㄷ. 연대회의 워크샾에 대하여
- ㄹ. 기타
3. 연대회의 재정에 대하여

1. 결성식 평가와 문제제기 토론:

- 1) 명칭문제-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라는 명칭을 당분간 계속 사용한다. 전체회의에 다수 참석하였을 때 확정하기로 한다.
- 2) 조직수준과 사업수준-처음 결정한대로 따른다. 조직수준을 연합체나 시민조직화해야 한다는 결성식 때의 문제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각 단체의 기존활동을 존중하면서 사업내용은 1, 2차 회의에서 정한 것과 결성식에서 밝힌바에 국한한다.

2. 사업점검

ㄱ. 민간단체보고서 집필상황 점검

1장 민변 2장, 3장 이기범 - 서문에 해당되므로 최종원고가 완료될 시기에 집필한다.

4장 민주법연(0)

5장 민변()

부스러기선교회(0)

노혜련()

전국자원활동단체협의회()

6장 이용교(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0)

7장 전교조()

8장 민변()

성폭력상담소(0)

ㄴ. 어린이날 기획행사에 대하여

① 언론사와의 공동기획시리즈:

원래 계획은 각 단체의 가능한 주제와 필진을 취합한 후 기획을 잡으려 했으나, 이날 회의 결과 간사진이 기획안을 먼저 제출한 후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기획안은 14 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② 각 단체 5월 어린이날 행사기획 공유: 전교조와 지탁연은 해마다 있어온 어린이날 행사를 전국 50개 지역에서 치를 예정이며, 서공연은 수락산 등산대회, 열린글 나눔삶터는 자유학교를 열 계획이다. 성폭력상담소는 백화점을 교섭하여 성폭력예방비디오를 이용한 사회교육을 준비중이다. 여기에 관심있는 단체는 각 단체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③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조약에 관한 홍보물 제작과 배포:

연대회의 사업기획 속에 예정되어 있던 사업으로 권리당사자인 어린이, 청소년이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쉽게 읽을 수 있는 조약해설이 필요하다.

간사가 기획을, 글쓰기는 열린글 나눔삶터가 맡고, 삽화는 만화 '반쪽이'의 작가와 공동육아연구회의 현병호 선생님께 부탁하기로 하였다.

홍보물의 배포는 각 단체의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 하며, 특별한 행사가 없는 단체는 대공원 등 한곳에 모여 선전전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선전전에 대해서는 추후 공고하기로 한다.

ㄴ. 연대회의 워크샵에 대하여

제안: 5월 중순 보고서 한글본이 완료될 시기에 갖는다.

1부 보고서 내용 공유, 2부 친목의 시간으로 갖는다. 또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토론에 집중한다.

문제점: 보고서 내용을 놓고 정부-민간단체 토론회가 열린다면 사전 준비모임으로 내부 워크샵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경우는 집필진의 모임으로 압축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1, 2부 형식으로 가질경우 모임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참석자의 성격도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토론결과: 각 단체실무자와 회원으로 확대하지 않고 집필진의 모임으로만 갖는다. 시기는 집필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ㄷ. 기타

1) 각 단체 회원 회람용 문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하여:

여기에 포함될 내용은 연대회의 결성목적, 사업내용, 조약에 대한 간단한 해설, 참가단체에 대한 소개, 참가단체의 팜플렛과 자료집 목록, 참가단체의 권리와 의무이다.

토의결과 위와같은 내용은 자료집에 첨부될 내용과 겹치므로 연대회의 활동이 상당히 진행된 지금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으며, 나중에 종합자료집에 연대회의 활동일지와 함께 첨부하기로 했다. 회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라면 각 단체가 자기단체의 소식지에 연대회의 소개를 신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간사단체가 1장 분량의 포맷을 작성한다. 14일까지 제출한다.

2) 어린이, 청소년이 볼 수 있는 홍보물 제작에 앞서 각 단체 실무자 교육용 자료가 먼저 필요하다는 추가제안이 있었다.

3) 일정점검

4월 17일: 초고검토 후 각 단체반송

4월 24일: 집필자 초고검토모임 오후 7시 인권운동사랑방

5월 : 어린이날 기획시리즈, '조약' 홍보물 배포

5월 중순: 한글원고완료

정부-민간단체 토론회 제안

5월 말 : 영문번역완료, 감수

6월 중순: 정부-민간단체토론회, 공동기자회견/ 유엔에 보고서제출

10월 : 비엔나에 대표파견

*** 파견할 대표에 대하여 각 단체의 고민과 추천이 필요하다.

면책주의사호.

3. 재정보고

수입

민변	13만원	인생호 ; NCC
열린글나눔삶터	13만원	민족번역 3만
민주법연	10만원	지당연
전국자원활동단체협의회	13만원	전교조
김경영()	13만원	경북법대법부
조월례()	13만원	우리
보육모임()	13만원	책부로서
여성단체연합	5만원	5만
부스러기선교회	13만원	경북법대
787-01-0011317()	13만원	인권운동장
인권운동사랑방	13만원	10만원
세계유아교육기구 한국위원회	10만원	2020년도 결산
정부보고서 판매	1만 6천원	총액

합계 - 142만원

지출

정부보고서 구입	52,000 원
결성식장소대여	300,000 원
결성식 자료집	154,500 원
결성식 현수막	40,000 원
결성식 뒷풀이	188,000 원
결성식 잡비	25,870 원
우편발송비	31,370 원
복사비	78,330 원

합계 - 870, 070 원

잔액 549, 930 원.

추정예산: 수입-분담금완납시 70만원 추가-합계: 1,249,930원

지출- 번역료 60만원

번역감수	10만원
홍보비	20만원
행사비	20만원
기타	15만원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종합자료집발간, 대표자비엔나파견비용

*입금자 이름으로는 단체명을 알 수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분담금을 납부하시지 않은 단체는 <국민은행054-21-0442-803 류은숙> 앞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초안의 제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안으로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주십시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연락처: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 팩스 715-9186 /ID Rights

수신: 각 단체 「연대회의」담당자

매수: 2

초고검토모임 보고

때와 곳: 4월 24일(월) 오후 7시, 인권운동사랑방

참석: 이기범(실무대표), 이찬진(민변), 김한균(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강명순(부스러기선교회), 류은숙(실무간사, 인권운동사랑방), 최현숙(지탁연), 안창도(개인, 교육민회), 이용교(개인, 청소년개발원), 임혜숙(공부방연합회), 송준현(시설문제연구회)

내용:

1)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조약에 대한 민간보고서 초고검토:

초고를 함께 읽어가며 의견을 제시하고, 참고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초고를 수정하실 때 참고할 토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료인용시 최근 자료를 사용하자. 90, 91년 자료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80년대 후반 상황을 담고 있다. 되도록이면 93,4년에 나온 자료에 맞추도록 하자.

②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가장 적합한 조항에 집중하여 서술하고 다른 부분에선 2-3줄의 원론 정도만 언급한다.

③ 몇개 특정사건의 예를 들기보다는 보편적인 예를 들자.

④ 용어나 법제도, 기구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자.

⑤ 분량제한때문에 본문에 담지 못한 통계나 자료등은 부록에 실는다. 따라서, 본문설명에 뒷받침이 되는 통계나 자료를 초고수정시 반드시 보충한다.

⑥ 전체 복지예산 규모 등 개괄적인 수치보다는 어린이, 청소년에 관련된 것을 부각시킨다.

⑦ 사회,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우리나라에선 '문제'로 생각하지만 외국에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생략하고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자.

2) 어린이달 기획시리즈:

아래 주제와 필자는 **가안입니다**. 중앙일보와 함께하는 기획시리즈는 아래 주제에 해당하는 원고와 각 단체 텁방, 인터뷰를 첨가하여 '사례'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해당영역에 대한 고민과 자료준비를 서둘러 주십시오. 기획시리즈는 결정되는 대로 곧 시작됩니다.

제 1주제

1. 어린이 인권과 조약의 필요성(이기범)
2. 사회통념, 인식-어린이, 부모, 국가(사회)의 책임 분담: 철학적 규정(이기범)
3. 법제도 측면의 접근: 전통적 친권 개념의 전환, 4. 아동, 청소년의 개념과 관장부처, 관련 법의 분산(민변 또는 이용교)

제 2주제

5. 시민적 권리와 자유(김한균: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5-1 해설
5-2 학교-풍토, 자치활동, 사생활의 보호, 종교계 학교

5-3 정보접근권, 여가와 문화-도서관, 대중매체

제 3주제

6. 부모의 지도와 책임-시대변화, 부양의무, 양육비 청구 등 회수장치(노혜련)

7. 이혼(노혜련)

8. 가정환경 상실-요보호 아동지원(강명순)->가정결손의 종착역: (이찬진)

9. 가출(강명순)

10. 입양(노혜련)

제 4주제

11. 아동학대

12. 성폭력(성폭력상담소)

제 5주제(이용교)

13. 교통사고와 도로접근권

14. 장애아(장애인 권리문제연구소)

15. 의료보험

16. 노동법

제 6주제(최현숙)

17. 영육아보육/방과 후 학교(임재택)

18. 시설보호아동(시설문제연구회)

제 7주제

19. 교육권(전교조)

20. 어린이도서현황(어린이도서연구회)

21. 여가와 문화생활(임혜숙)

제 8주제- 대안종합(유보)

정부: 음부즈멘

사회: 공익봉사 지원

가정

당사자

3) 기타

①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각 단체의 어린이달 행사시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4월 25일,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의 Laura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단체보고서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며 보고서 준비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과 우리에게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듣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대회의 이름으로 답신을 보낼 예정입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1) 금주안으로 초고를 수정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원고를 보내실때는 모뎀을 이용하시거나 디스켓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ID는 Rights(천리안, 하이텔)입니다.

2) 초고에 첨부하지 않은 통계나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부록에 실거나 원고수정시 기초자료가 됩니다.

3) 분담금을 아직 내지 않은 단체는 아래 구좌로 속히 입금하여 주십시오.
국민은행(예금주: 류은숙) 054-21-0442-803